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48

발의연월일: 2025. 2. 21.

발 의 자:서영석·윤건영·이기헌

박홍배 · 노종면 · 이해식

백혜련 • 전진숙 • 박해철

안태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등 모성보호와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,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고, 그 기간도 짧다는 문제점이 있음.

또한,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'2023년 육아 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'에 따르면,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은 28.0%에 불과하여 여전히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저조한 상태임.

한편, 가족돌봄휴직의 경우에는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, 가족돌봄 휴직 및 휴가 기간이 무급이어서, 근로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보임.

이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
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,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,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(안 제19조, 제19조의2, 제22조의2, 제39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834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본문 중 "8세"를 "12세"로, "2학년"을 "6학년"으로 한다.

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제4항 본문 중 "1년"을 "2년"으로 하고, 같은 항단서 중 "그 기간"을 "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"으로 한다.

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 "노령으로"를 "노령, 자녀의 양육으로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가족돌봄휴직은 최초 30일을, 가족돌봄휴가는 사용한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한다.
- ⑦ 사업주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.

제39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 중 최초 30일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 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②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 직 및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19조(육아휴직) ① 사업주는 임	제19조(육아휴직) ①	
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		
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<u>8세</u>	<u>12</u> 세	
이하 또는 초등학교 <u>2학년</u> 이	<u>6</u> 학년	
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		
한다. 이하 같다)를 양육하기		
위하여 휴직(이하 "육아휴직"이		
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		
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	·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		
그러하지 아니하다.		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	
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	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	
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	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	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	
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	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	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	
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	4	
간은 <u>1년</u> 이내로 한다. 다만,	2 <u>년</u>	
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		
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		
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	1년	
<u>기간</u> 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	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	

이내로 한다.

⑤ ~ ⑦ (생 략)

제22조의2(근로자의 가족 돌봄 저 등을 위한 지원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 또는 손자 녀(이하 "가족"이라 한다)의 질 병, 사고,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(이하 "가족돌봄휴직"이라 한다)을 신 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,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 는 경우,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.

② ~ ⑤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•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세22조의2(근로자의 가족 돌봄
등을 위한 지원) ①
노령, 자녀의 양육으로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가족돌봄휴직은 최초 30일
을, 가족돌봄휴가는 사용한 휴
가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한다.
⑦ 사업주는 제6항에도 불구하
고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
휴가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경

<u>⑥</u> ~ <u>⑩</u> (생 략)

제39조(과태료) ① · ② (생 략)

-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8. (생 략) <신 설>
- 9. (생략)
- ④·⑤ (생 략)

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 급의 책임을 면한다.

<u>⑧</u> ~ <u>⑩</u> (현행 제6항부터 제1 0항까지와 같음)

제39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(3)	 	

- 1. ~ 8. (현행과 같음)
- 8의2.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 여 가족돌봄휴직 중 최초 30 일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유급 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
- 9. (현행과 같음)
- ④·⑤ (현행과 같음)